

보건복지부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현원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 ‘희연’ 등 7개 법인은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도 선임하지 않고 있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2명)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 ‘○○○’ 등 9개 법인은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경상남도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 ‘○○’ 등 9개 법인은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밀양시장,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
군수, 하동군수, 함양군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
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
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